

있는 자(수탁대상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98.9.21 입법예고하고, 기관, 법인,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상기 관계법령에 근거한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입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제12조(공급규정의 준수 의무 등)제1항의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한 것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과 관련한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공급사업본부 인력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고용승계, 신분보장, 퇴직금 정상등 세반사항은 신중한 처리로 민원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민간위탁 실행을 위한 수탁자 선정, 운영방안, 조직과 인력 등은 경영의 효율성 극대화 와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첨언하여, 동 사업의 예산 회계인 집단에 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지역난방공급설비, 배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정액을 산출 매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참고사항

○적립대상액('98년말) - 총누계액 9,681백만원

○적립현황

· '83~'90 : 총5,956백만원을 지출 에너지관리공단 명의로 적립하였으나, '91년 감사원의 결산 검사시 서울시에서 미관리한 것이 지적되어 이를 환수 접수 처리

· '91~'97 : 적자운영으로 미적립(예산 미편성)

· '98 : 6,040백만원(추경포함)예산편성 적립 예정 - 적립대상액의 62.3%

4.질의·답변 : 생략

5.심사결과

○원안가결(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

6.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5

1998. 10.
기획경제위원회

1.심사경과

가.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나.회부일자

1998년 10월 2일

다.상정일자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1998년 10월 19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제109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1998년 10월 21일) 질의·답변 토론, 의결

2.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산업경제국장 신동우)

가.제안이유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98.8.1)한다는 통보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심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나.주요골자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참고사항

1)관계법규 : 도시가스법 제20조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②(생략)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 내용의 변경을 위

| | |
|--|--|
| <p>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2)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p> <p>3.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p> <p>○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에 있어 도시가스요금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98.8.1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별도의 요금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p> <p>○아울러 위원 중 당연적인 공무원의 직위를 금번·조직개편으로 '98.8.12자 서울특별시직제규칙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p> <p>4.질의·답변 : 생략</p> <p>5.심사결과</p> <p>○원안가결(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p> <p>6.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업무의 위탁)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p> | <p>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p> <p>2.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3.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4.한국지역난방공사</p> <p>5.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p> <p>6.국내외 에너지관련 전문업체 또는 기관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업자</p> <p>7.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에너지공급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p> <p>2.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p> <p>3.시설분담금, 열요금 등의 징수</p> <p>제12조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탁업무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업무이관시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한다.</p> <p>②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한 업무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p> <p>-----</p> <p>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